

	<h2>학생회운영규정</h2>	규정번호	5-1-3
		제정일자	2012.02.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차수	3차
		소관부서	학생성공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건전하고 활동적인 대학문화 조성 및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임하여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며,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하는데 있다.

제2조(명칭) 안산대학교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3조(운영) 본회는 회원에 의한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제4조(회원 및 제한) ①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② 위탁생·전공심화·편입생·정원외 입학생의 경우 자격이 제한 될 수 있다.

③ 휴학·자퇴·제적된 자는 자격을 상실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며, 본회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학생자치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기구) 본회의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금지활동) 본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제8조(효력정지) ① 학생회운영규정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② 제7조(금지활동)를 위반 한 경우에는 그 효력 및 활동을 정지된다.

③ 대학운영상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경우 교무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효력정지를 할 수 있다.

제9조(임무) 본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활동 등을 할 수 있다.
2. 예술·체육·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다.
3. 보건·의료봉사·계몽활동·봉사활동·선교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4. 기타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친목등 학생자치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위 및 권한) ① 본회는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각 1인을 둔다.

②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각호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1. 학생회장은 각 부서의 장 및 차장을 임명하고 총장의 인준을 받는다.
2. 학생회장은 각 부서의 장을 통솔한다.
3.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규정의 개정안을 건의 하는 일.
5. 대외 활동에 있어서 대표권을 갖는 일.
6. 기타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집행하는 일.

③ 학생부회장은 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학생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당선자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자격) 학생회장 및 학생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기독교정신을 가진 자로서 행실이 바르고 지휘, 통솔능력이 있는 자
2. 임기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3.0점)이상인자
3.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교내 종교 활동에 적극 참석한 자

제13조(선출 및 불신임) ① 학생회장 및 학생부회장은 학생회장선거규정에 의거 선출 한다.

② 학생회장·학생부회장이 본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을 경우 학생회장선거규정 또는 대의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불신임(탄핵)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회장선거규정을 우선한다.

제14조(집행부)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15조(부서 및 임원구성) ① 집행부는 총무부, 기획부, 학생부, 홍보부, 대외협력부, 체육부, 복지부를 둔다.

② 각부는 부장 1인과 차장 1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업무 및 권한) ① 집행부는 학생회장이 관장하며 소관업무를 집행한다.

② 각 부는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총무부 : 본회의 서무, 회계 및 각종회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 기획부 : 본회의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학생부 : 학내·외 활동 및 친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홍보부 : 본회의 활동에 관한 홍보 및 여론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5. 대외협력부 : 교내·외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를 담당한다.
6. 체육부 :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행사 및 친선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복지부 : 학생들의 후생복지 활동과 전반적인 복지사항을 담당한다.

제17조(집행부 회의 및 의결) ① 정기회는 월 1회로 하며, 임시회는 학생회장이 필요시 또는 집행부 부장·차장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집행부 인원 과반수 참석에 2/3이상 찬성이 있을시 의결 한다.

③ 집행부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 할 수 있다.

1.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건
2. 행사계획 및 진행에 관한 건
3. 동아리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집행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8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재학생(신입생포함)의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운영한다.

② 학생회비의 수납을 학생성공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며, 자금관리는 학생성공처장이 한다.

제19조(예산편성 및 지출) ① 학생회장은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얻어 학생성공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득이 한 경우 예산안이 소정 기일 내에 편성이 어려워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학생성공처장의 승인을 받아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③ 지출은 예산 범위내에서 각부 부장의 발의하여 학생부회장과 학생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학생성공처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④ 지출이 예산 범위내를 초과할 경우 초과사유와 전용할 예산항목을 정하여 대의원의장의 자문을 받아 학생성공처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제20조(결산) ① 각 부 부장은 사업별 종료 후 지출내역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학생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장은 보고된 결산자료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생회장은 회계연도 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얻어 학생성공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학년 말 인정을 감안하여 대의원장과 협의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21조(감사) 본회는 회계연도 말에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대의원회에서는 감사내용을 학생성공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학생회장 임기인 1월부터 12월말까지 한다.

제23조(회원의 평가 및 방법) ① 임원의 활동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산정한다.
2. 업무기한 미준수 2회는 결석 1회로 산정한다.
3. 무단 결석 1회는 결석 2회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최종 산정된 결석 횟수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한다.

1. 결석 1회 이하: 100% 지급
2. 결석 2회: 80% 지급
3. 결석 3회: 60% 지급
4. 결석 4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다(0%)

[본조신설 2026.03.01.]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2026학년도 학생회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